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개선방향: 한국과 일본의 기부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쓰구\*\*·장 지 현\*\*\*

The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in Korea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sustainability because it is mainly operat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e private sector. For example the government currently provides a percentage of indirect labor costs, but this is a time-limited subsidy.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government introduced tax deductions for donations to non-profit organizations in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ocial enterprise funding policies in Korea and Japan and to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ase are that transparen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most conducive to gathering donations, and tax deductible donations can improve private sector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 In Korea, tax deductions for donations could similarly improve social enterprise support, not only from government, but also from the private sector.

[Key Words: Social enterprise, Financial assistance, Tax deductible donations, Specified non-profit juridical person in Japan]

### I. 서론

행정 및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제3의 섹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전개와 실제적 활동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경험과 교훈을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 제도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B00031).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motomonemoto@gmail.com).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ccamjik2@naver.com).

화가 추진되어 왔고 복지국가에서부터 복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체화하는 개념 중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주체가 대두되어 왔다.<sup>1)</sup>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개념이 명확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sup>2)</sup> 이는 미국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실용주의적 기원을 수반하면서 발전되어 왔다(後房雄, 2009: 57-60).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존 협동조합, 시민단체 외에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을 계기로 1998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하, ‘NPO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고 현재 약 4만 개에 이르는 NPO법인이 제3의 섹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세제 도입을 통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IMF 통화위기 이후 실업·빈곤문제를 배경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고 한다)’ 시행에 따라 동 법에 의거해 인증받은 단체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단, 단기성고에 치중하는 고용정책 중심의 지원제도로서 일시적 고용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최해식, 2011: 62)가 제기되고 있다.<sup>3)</sup>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4년 동안은 경영 컨설팅, 사업 개발비, 사회적 일자리 지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후에 받는 지원은 법인세 감면<sup>4)</sup> 정도이다(문보경, 2011: 31). 일정한 비율로 취약계층에게 고용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군다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육성법, §8⑦) 사회적기업은 그러한 요건만으로도 경영 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건비 등 지원 만료 이후 사회적기업의 존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장우진 외, 2011: 107).<sup>5)</sup>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업에 더해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 지탱되는 소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지원과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1) T. Jeantet(2006: 26-27)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협동조합·공제·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등이 사회적 경제를 형성해 왔으며 그 일련의 원칙으로 ①농민·노동자·공무원·소비자·시민 등이 협동해 자유롭게 각기 활동을 추진해 왔음, ②민주주의·자본소유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1표를 가짐, 그리고 ③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짐, ④자기자금을 분할할 수 없음, ⑤연대, ⑥개인의 촉진, ⑦국가 및 모든 종류의 공공단체에서 자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미국에서 비영리 조직은 주로 세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다. 특히 과세공제를 받고 있거나 또는 내국세 입법 제501항(c)(3)에 의거해 세제혜택을 받는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J. Defourmy, 2007: 12-13).

3) 비유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대로 링거액을 꽂아 누워 있는 형태와 같다고 하는 실무자 의견도 있다.

4) 법인세 감면은 유예기간을 포함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오현석·김영호, 2011: 60).

5)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간 한시적으로 받아 온 정부의 재정지원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끊기면서 기업들은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원 연장에 부정적이다(경향일보, 2011년 12월 18일자). 그러나 2007년 51개 기업 중 41개, 2008년 212개 중 127개, 2009년 297개 중 225개, 2010년 491개 중 420개라는 수많은 사회적기업이 영입이익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곽선화, 2010: 142; 경향일보, 2011년 12월 18일자).

이에 본 연구는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거버넌스적 협력 주체로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일본 NPO법인 재정지원과 기부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자 요구사항으로서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확대 제도정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최승호, 2009;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170-171; 오내원 외, 2010: 87 참고). 일본 기부세제는 NPO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기부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 구조는 NPO법인이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의해 지탱되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참조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통한 재정지원이 존재하지만 지역사회 현장에서 세제혜택의 체감정도는 낮다고 평가된다. 물론 지속적 활동을 위해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병행되고 강화된다면 지역사회에 의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활동소개와 협력관계 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는 결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성공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에게부터 지탱되는 사회적기업의 위상을 갖춰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1)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동 법에 의거해 인증된 단체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1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기업의 실체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형태에 중점을 두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다(박재환·이우진: 2009).<sup>6)</sup>

6) 예를 들어 동네에서 노인들이 찻집에서 차를 나르며 하루에 잠깐씩 일하는 형태도 개념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 최저임금제 준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 심사에서 선정되어야만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인건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이로 인해 근로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법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사례도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존재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육성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사회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실제로 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되어 있다.<sup>7)</sup>

인증요건은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②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⑥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그리고 ⑦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등과 같은 기준이 있다(육성법 시행령, §8 참고).

육성법에 의해 사회 서비스 분야 및 사회적기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우선 사회 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sup>8)</sup>의 서비스를 말한다(육성법, §2②).<sup>9)</sup> 2012년 1월 현재 한국 사회적기업은 644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구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업종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구분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문화예술 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가사 지원	환경	기타
인증 수	42	10	92	87	23	0	55	110	225
비율(%)	6.5	1.6	14.3	13.5	3.6	0	8.5	17.1	34.9

자료: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자료(2012.1 기준) 참고, 연구자 작성.

7)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마을기업(행정안전부), 농어촌 공동체 회사(농림수산식품부))으로 구분되지만 본 논문은 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8)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등(육성법 시행령, §3).

9)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른 구분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다섯 가지가 있다(육성법 시행령, §9 참고).

## 2) 일본의 사회적기업

일본에서는 현재 한국과 같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내건 법제도가 없다. 그러나 행정 및 영리기업과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 이른바 제3의 섹터에 속하는 실체로서 NPO법인(특정 비영리 활동법인)<sup>10)</sup>을 비롯해 각종 협동조합, 지연(地緣) 조직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등이 있다.<sup>11)</sup>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핵심이 지역제과를 극복하는 지역주민들의 활력을 촉진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장원봉, 2008b: 63)을 고려하면 일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탄생한 NPO법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정·세제지원 또한 현재 일본의 경우 NPO법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하 일본사례에 있어서는 NPO법인에 한정해 살펴보기로 한다.<sup>12)</sup>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추진해 왔던 유럽·미국 추종형 경제성장이 종언을 맞이함에 따라 종래의 국가·기업·지역주민 관계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後房雄, 2009: 32-33). 이에 정치·경제·행정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을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 지역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는 1998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하, ‘NPO법’이라고 한다)’ 제정으로 이르렀다. NPO법의 특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간편한 절차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데 있다.

NPO법은 간편한 방법으로 법인격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NPO법인)’을 부여(인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면 민법상 계약주체로 기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 법은 시민단체가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 획기적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동 법에 의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의 의의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일본 법제도상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帶刀治, 2004: 228).

NPO법에 따른 법인(인증) 요건은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2②), ②종교 및 정치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2②), ③사원 10명 이상으로(§12), ④폭력단 단체가 아니며

10) 일본에서 시민단체는 1980년대 이후부터 이의제기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쇠퇴에 대신해 대두해 왔고(後房雄, 2004: 25) NPO는 그러한 연장선 위에 1998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 제정을 계기로 NPO법인이 급증하였고 NPO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네모토 마사쓰구, 2011: 136-137).

11) 여기서 행정과의 폐쇄적 의존관계(後房雄, 2009: 46)가 지적되고 있는 각종 공익법인(사단, 재단) 등은 그러한 의미에서 제3의 섹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였다.

12) NPO법인의 한계로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 대상이 되지 않아 융자를 받기가 어렵고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때 자금조달이 과제가 된다. 이 과제에 대해 ‘사회사업법인(가칭)’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사업 시작 시에 출자를 모집할 수 있고(활동 중은 배당 없음)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다(橫田能洋, 2010; 内閣府, 2010). 단 현재 ‘사회사업법인(가칭)’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야 한다(§12) 등이다.

나아가 NPO법인 중 운영조직과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법인을 인정 NPO법인이라고 한다. 인정 NPO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정 요건은 ①퍼블릭 서포트 테스트(이하, ‘PST’이라고 한다)<sup>13)</sup>의 충족, ②활동대상이 회원 위주로 한 공익(共益)적 활동이 아님, ③적정한 운영조직 및 경리, ④사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⑤적정한 정보공개, ⑥소할청에 대한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⑦법령위반, 부정행위 등이 없고, ⑧성립 후 1년을 넘은 기간의 경과 등이 있다.<sup>14)</sup>

NPO법인은 법이 제정된 지 13년 사이에 약 4만 개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사회적 수요와 이에 상응하고자 하는 동향의 실제적 존재를 의미한다(後房雄, 2009: 3).<sup>15)</sup> 2011년 12월 31일 현재 활동분야별 NPO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sup>16)</sup>

**<표 2> NPO법인 활동 분야(복수회답) 분포**

활동 분야	NPO법인 수	비율(%)
1. 보건, 의료, 복지	25,614	57.8
2. 사회교육	20,645	46.6
3. 커뮤니티 형성	18,666	42.1
4.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14,961	33.8
5. 환경보전	12,707	28.7
6. 재해구원활동	2,953	6.7
7. 지역안전활동	4,660	10.5
8. 인권, 평화	7,154	16.2
9. 국제협력	8,629	19.5

(다음 쪽에 계속)

13) PST에 대해서는 <표 8> 참고.

14) 2011년 6월 15일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定非營利活動促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11년 법률 제70호; 2012년 4월 1일 시행)’이 성립되어 ‘예비 인정 NPO법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인정기준으로 인정 NPO법인의 8개 요건 중 PST 이외 7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예비 인정을 하게 되었다.

15) 1896년에 제정된 민법 제34조에 의해 규정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담당관청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는 각종 공익단체 수가 사단법인 약 12,000개(2007년), 재단법인 약 12,000개(2007년), 사회복지법인 약 18,000개(2007년), 학교법인 약 7,000개(2003년), 의료법인 약 45,000개(2008년) 있는 데 비해 NPO법인은 법이 제정된 지 13년 사이에 약 4만 개로 증가하였다(後房雄, 2009: 3; 네모토 마사쓰구, 2011: 140).

16) 2011년 6월 15일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성립에 따라 17개 활동분야에 더해 세 가지 활동분야(①관광진흥, ②농산어촌 및 중산간(中山間) 지역의 진흥, ③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령(政令)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가 추가되었다.

활동분야	NPO법인 수	비율(%)
10. 남녀공동참여	3,751	8.5
11. 청소년 건전육성	18,688	42.2
12. 정보사회	4,222	9.5
13. 과학기술	2,337	5.3
14. 경제활동	6,979	15.8
15. 직업, 고용	9,646	21.8
16. 소비자	2,707	6.1
17. 중간지원	20,665	46.7

\* 비율(%)은 전체 단체 수(44,291 개)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内閣府(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活動分野について  
 (2011/12/31 現在)(www.npo-homepage.go.jp)를 기초로 작성.

### 3) 한·일 간 사회적기업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다양한 배경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바이지만 특히 IMF 위기(1997년) 이후 극심해진 양극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나아가 한미 FTA 발효 후 규제완화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극복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한 법제도가 추구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①기존 사회 시스템의 한계, ②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도시형 사회·고령형 사회, ③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을 계기로 한 NPO법 제정, ④분권형 사회창조와 행·재정 개혁 등을 배경으로 NPO가 발전되어 왔다(帶刀治, 2004: 226-229).

한국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명확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널리 중간층을 포함한 NPO가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필요의 해결(장원봉, 2008a: 70)이라는 의미에서 한국 사회적기업과 일본 NPO는 공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에서 보는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1)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내용

한국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취약계층 중심의 인력구조로 시장경쟁

의 우월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경제적 지출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매출을 통한 원가회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최호윤, 2010: 99).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지만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회 서비스 공급자원 확보라는 행정 의존적 차원을 넘어(장원봉, 2010: 42) 자립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폭넓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표 3>처럼 경영 컨설팅을 제공받는 경영적 지원과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등을 받는 재정적 지원, 그리고 프로보노와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등의 기타지원이 있고 그 외 협력기관이 있다.

단, 지원내용 중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 인증과 정부 지원사업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증은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전제가 된다(김순양, 2010: 209, 225). 이처럼 현재 한국 사회적기업은 주로 고용내용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증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정부 주도적 고용촉진 지원사업이라는 구조에 지니고 있다.

**<표 3> 한국 사회적기업 지원 유형과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 세부 내용
경영지원	경영 컨설팅	◦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의 토대 마련
	인건비 및 전문인력	◦ 운영에 필요한 취약계층의 인건비 및 전문인력의 급여 일부 보조
재정지원	사업 개발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보조
	시설 운영비 대부	◦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 ◦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사회보험(4대 보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지원	◦ 사회적기업 대출지원(2012년 1월부터 시행)
기타지원	프로보노	◦ 경영자문 및 멘토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경쟁력 제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해 판로 마련
협력기관	고용센터	◦ 취약계층의 참여자 알선 등
	자치단체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지역 모델 발굴 및 설명회·간담회 개최 ◦ 상시 상담 및 행정지원, 홍보 및 교육 등
	특화지원기관	◦ 자원연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자료: 사회적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2012: 11-14).

<표 3>에서 기간제한이 없는 지원내용을 추출하면 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프로보노, 협력기간 등을 들 수 있다.

## 2) 일본 사회적기업(NPO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내용

현재 약 4만 개 있는 NPO법인 중 3,000만 엔 이상 사업규모가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内閣府, 2010: 3). 재정규모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NPO법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과제 즉 인력, 정보, 재정부족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론 NPO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편에서 NPO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정비 내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帶刀治, 2004: 242-243; 네모토 마사쓰구, 2011: 141).

일본 NPO법인에 대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없다. 경영지원은 앞의 <표 2> 중 17번째 활동분야로 구분되는 중간지원 NPO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등 대부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 일본 NPO 지원 유형과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 세부 내용
경영지원	경영 컨설팅	° 중간지원 NPO(주로 활동분야 17번째에 해당하는 단체에 의함)
재정지원	시설·운영비 등 대부	°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세제지원	° 주민세 감면(지자체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손금산입(인정 NPO법인)
기타지원	볼런티어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긴급고용 창출사업	° 지역 구성원 일자리 참여를 통한 경쟁력 제고(한시적 추진)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 '새로운 공공(公共)' 지원사업(2011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NPO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NPO 등의 활동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 기부모집 지원사업 - 용자이용 원활화 지원사업 - 일시적 연결용자(つなぎ融資)에 대한 이자보급 사업 - NPO 모범사업 시행 - 사회혁신 추진 모범사업 협력

자료: '새로운 공공' 부분은 内閣府(2011) 참고. 연구자 작성.

이에 2012년 세제개혁을 통해 간접적 지원으로 인정 NPO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부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이 마련되었다. 기타 한시적으로 '긴급고용 창출사업(2011년도 말까지)', '새로운 공공(公共)' 지원사업<sup>17)</sup> 등이 있다.

17) 내각부는 NPO법인 등이 성장하는 기반정비를 2년간 실시하는 '새로운 공공(公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内閣府, 2011). '새로운 공공'이란 종래 관(官)이 독점해 왔던 영역을 공공에 열고 관만으로는 실시할

한편 <표 4>에서 기간제한이 없는 지원내용을 추출하면 중간지원 NPO에 의한 지원, 주민세 감면, 기부금 세액공제·손금산입, 불런티어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과 비교하면 주민세 감면, 세액공제, 불런티어 참여 등이 특징적이다.

###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연구의 분석 틀 구성

일반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리더십, 의사결정 능력, 도전정신, 인재확보 등으로 꼽는 이장우·장수덕(2001)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한국의 33개 사회적기업의 실증적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안영규·박의룡(2011)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성공한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기업의 성공의 요인으로서 정부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중, 재원 및 세제지원 부문으로 국한해 선행연구의 평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순위 분석(AHP)을 실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용호·송경수(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시설비 지원—재정지원—경영지원—조세 및 보험료 지원 등 순서로 분석되었다. 한편 김학실(2011)의 연구에서는 세금감면 지원—용자지원—인건비 지원 등 순서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보경(2011: 27-32)의 연구에서 재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부분을 추출하면 민간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일몰제 성격의 지원방식 개선,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 도구 개발과 확산, 투자설계와 지원 총량제 도입, 적정 입찰제 방안 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김혜원(2011: 57-82)은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율되지 못한 육성 및 지원이 재정 지원사업의 중복 및 경쟁, 행정조직의 병립과 중복, 중간지원 조직의 경쟁과 중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 이에 대해 민간 지원기관 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로 최호운(2010: 91-110)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범규정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자금출연을 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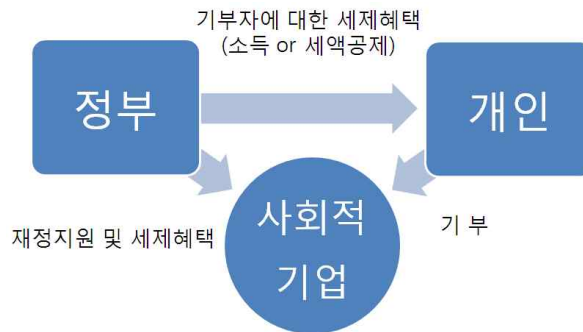
---

수 없었던 영역을 관민공동으로 담당하는 등 시민, NPO, 기업 등이 공적재산과 서비스 제공에 관여한다는 개념이다. 지원대상은 NPO법인, 불런티어 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지연조직, 협동조합 등의 민간 비영리 조직으로 자발적·주체적으로 ‘새로운 공공’의 취지에 합치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단체 등이다. 그러한 조직·단체 등 몇 개가 모인 연합조직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

으로 공제하는 등 사회환원의 원활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축약하면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한시적이고 정부 주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편 민간지원과 연계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처럼 분석 틀을 구성함으로써 민간자원 제고와 정부의 역할을 연결하고 이 틀에 준거해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우선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개괄한 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주목한다. 재정지원 항목은 한국에 경우 육성법에 따라 인건비, 사업 개발비, 시설 및 운영비, 사회보험, 특별보증 지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2010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일본 사례 또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중 특히 개인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sup>18)</sup>라는 공동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고 한·일 양국에 있어 자금 흐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부 인센티브 방식에 주목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민간에 있어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재인식되고 있는 기부의 두 가지 흐름(川北秀人, 2011: 33)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

18) 소득 재분배에 있어 소득공제는 세금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편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경감액이 크다는 소득공제의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소득 재분배가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제액이 확실적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의 경감정도와 세제에 의한 지원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日本税理士会連合会·税制審議會, 2010: 2, 10).

중 기부, 모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십자에서 취합되고 각 지자체에 배분된 후 최종적으로 이재민 본인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복잡한 절차와 심사과정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이재민 본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둘째, 이재민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폐허가 되어버린 피해지역에서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셋째, 기존 모금단체의 운영 전반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각 개인은 적십자, 지자체가 아닌 모금, 기부단체를 통해 자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원금 배분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걸리고 소수자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재민들의 조그마한 수요라고 하더라도 바로 공급할 수 있다. 둘째, 이재민에 대한 직접적 금전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재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 정부·행정기관을 통해 이재민 본인에게 전달되는 자금의 흐름과 달리 그 시간적, 공정성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에게서 피해지역 지원단체로 직접 즉시적으로 전달하는 흐름이 있으며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후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의 장단점은 재난 시뿐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액이더라도 일반 개인에서부터 기부를 모으고 사회적기업에게 전달되면 그 재정력이 향상되고 자율적 활동이 촉진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의 주안점으로 한·일 법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적기업 재정·세제지원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9)</sup>

### Ⅲ.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의 한·일 비교

#### 1. 재정지원(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 1)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는 사회적기업

19) 단 그 대신 정부지원은 필요없다는 논의는 아니다.

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계기업 또는 연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 규정이 있다(이하, 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1)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1인당 월 98만 원 지급한다(2011년 기준). 또한 사업참여 연대별로 사회적기업 1년차인 단체에는 이 금액의 90%, 2년차는 80%, 3년차에는 70%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상자는 인증 사회적기업 기관 자체가 되기도 하고 전문인력 또는 은퇴 전문 인력<sup>20)</sup>이다. 전문인력의 경우 유급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3인(50인 미만인 경우 2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150만 원 한도를 인건비 일부로 지급하고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부분은 신청기관이 자부담한다.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최대 3년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 범위에는 홍보 비용뿐만 아니라 전략분야의 사업발굴, 고객관리 등 사업 개발비와 시장 수요조사, 사업확장 등을 위한 연구비, 고용보험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참여 근로자의 교육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원한도 금액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인 경우 7천만 원 이내, 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분야별로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이 매우 우수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 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3) 시설 및 운영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인 경영상 어려움 특히 자본력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이원남, 2011).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설치 비용 등을 지원 또는 용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지원사업은 복지 사업자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20)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은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유급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2인(50인 미만인 경우 1인)을 지원받고 추가 내용은 전문인력의 지원내용과 같다.

(4) 사회보험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 적용 대상은 기관 또는 근로자가 된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보험료율은 최저기준을 적용해 단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회보험 지원내용

사회보험	매월 1인당 지원금	계산방법(비율)
고용보험	6,000 원	90,3000 × 0.7%
산재보험	6,000 원	90,3000 × 0.7%
건강보험	27,000 원	90,3000 × 3.0%
국민연금	40,000 원	90,3000 × 4.5%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재구성.

(5)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청<sup>21)</sup>은 2012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회적기업은 4억 원 이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6>과 같다.

21)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및 신성장 기반 자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 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 재창업, 청년전용 창업으로 구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성장 기반 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외 다름 <표>처럼 미소금융 재단에 의한 지원사업이 있다.

<표> 미소금융 재단 지원사업

복지사업자명	대출금액	대출기간	연 이율
열매나눔재단	1억 원 이내	5년	4% 이내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억 원 이내	5년	3% 이내
민생포럼	2억 원 이내	5년	2% 이내
함께일하는재단	2억 원 이내	6년	2% 이내
(사) 사람사랑	1억 원 이내	5년	4% 이내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을 재구성.

<표 6> 중소기업청의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구 분	비영리 사회적기업	영리 사회적기업
보증비율	90%	100%
보증료	연 0.5%	
대출금리	3.7%	4.6%
보증 기간 및 상환방법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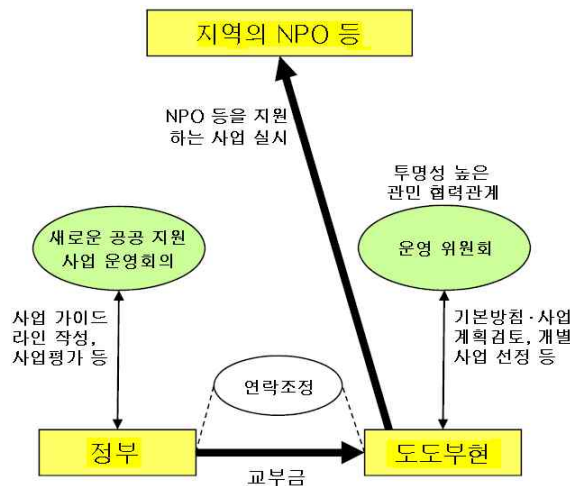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재구성.

## 2) 일본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NPO법인에 대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한시적으로 ‘긴급고용 창출사업’, ‘새로운 공공(公共)’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중 ‘긴급고용 창출사업’은 2011년도 말에 종료되었다.

‘새로운 공공(公共)’ 지원사업은 87.5억 엔 예산이 교부금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고 각 도도부현에 기금이 설치된다. 각 도도부현은 이 기금을 통해 NPO 등 새로운 공공 담당주체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NPO 등이 행정과 협력해 실시하는 구체적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실시기간은 2년으로 2013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실시에 대해서는 관·민 공동의 운영 위원회가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사업실시에 관여한다. 새로운 공공 지원사업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새로운 공공 지원사업 개념도



자료: 內閣府(2011: 5).

사업내용은 다음 두 가지 영역, 여섯 가지 사업이 있다.

먼저 도도부현(또는 위탁을 받은 중간지원조직)이 NPO 등 민간 비영리 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해 활동저해 요인을 해결하는 영역이 있다.

첫째, NPO 등 활동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지원 등이 있다.

둘째, 기부모집 지원사업으로 기부모집 행사개최 등이다.

셋째, 용자이용 원활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파견에 의한 개별지도 등이 있다.

넷째, 일시적 연결융자(つなぎ融資)에 대한 이자보급 사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 NPO 등 민간 비영리 조직,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다음과 같은 모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공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모범사업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각 지역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섯째,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모범사업으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기존제도와 규제의 제약을 극복하는 사업이다.

단 이 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주체와 지역수요에 기초한 사업을 하지 못하면 공적 자금을 의존하는 단체를 늘릴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 2. 세제혜택(사회적기업 및 개인 대상)

### 1) 한국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직접방법과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지정 기부금을 인정해 주는 간접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 2010년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해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이하, ‘개편(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세제지원에 관해 동 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1)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영리·비영리 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 시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2011년 법인세율은 <표 7>과 같다.

<표 7> 법인·소득별 법인세율(2011년)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누적공제
영리·비영리 법인	2억 원 이하	11%	-
	2억 원 초과	22%	2,400만 원
조합법인		9%	

자료: 국세청(www.nts.go.kr).

이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 6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부터 4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인증받은 후 이익이 나지 않는 사회적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감면기간은 유예기간을 포함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기획재정부, 2010: 8; 오현석·김영호, 2011: 60).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sup>22)</sup> 인하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최저한 세율 7%이 적용된다(조세특례 제한법 제132조).<sup>23)</sup>

(3)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이를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이전에는 연계기업<sup>24)</sup>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을 하였지만 이번 개편(안)은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sup>25)</sup>을 허용하도록 각각 비율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기준

22) 최저한 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감면되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 목적 상 공제와 감면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담 형평성과 국민개세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소득자에 대한 최저한 세제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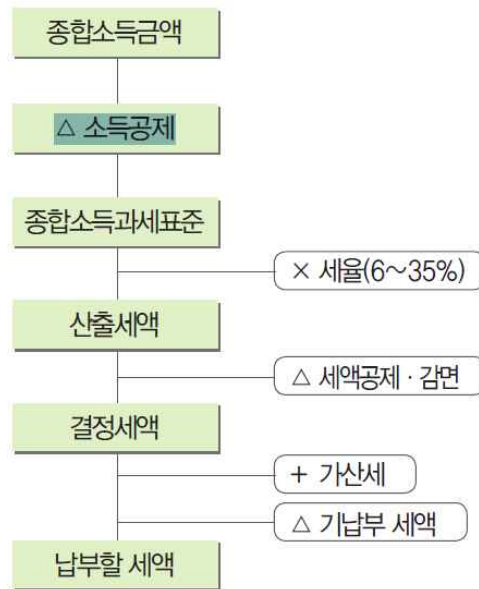
23) 2011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었다 (§2①2).

24)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된 자를 말한다(육성법, §2④).

25) 손금산입이란 당해년도에 기업회계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산입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소득금액<sup>26)</sup>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30% 이다(국세청, 2011: 191). 소득공제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소득공제 방법(한국)



자료: 국세청(2011: 156)을 재구성.

## 2) 일본

일본에서는 1998년에 제정된 NPO법에 근거해 법인격을 취득한 NPO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NPO 세제개혁, NPO법 개정 그리고 NPO법인 회계기준 책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NPO 세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다.

첫째, 2011년 6월 22일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및 고용정세에 대응해 세제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現下の厳しい経済状況及び雇用情勢に対応して税制の整備を図るための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11년 법률 제82호)’이 성립되었다(동년 7월 1일 시행). NPO법인과 관련이 있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NPO법인<sup>27)</sup>에 대해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40%가 소득세에서 또한 10%가 주민세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합쳐 최대 기부금액의 5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액의 절반이 연말정산 시에 돌려줌으로써 기부자와 기부금액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26)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그리고 이러한 세제혜택 조치를 받을 수 있는 NPO법인을 인정하는 요건이 완화되었다. 즉 신규로 ‘연간 3,000엔 이상 기부한 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것’ 등을 인정요건에 추가해 세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새로운 기부세제 도입에 의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NPO법인에 대한 기부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NPO법인 측에서는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 활동내용과 질, 회계내용과 정보공개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부세제 개정을 계기로 NPO법인 활동의 발전과 이를 지탱하는 기부가 확대되고 나아가 일본에 기부문화가 정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渥美哲, 2011).

세액공제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27) 인정 NPO법인이라고 함은 NPO법인 중 다음 여덟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청 장관이 인정 한 법인을 말한다.

- ① 퍼블릭 서퍼트 테스트(PST)에 합격함(PST에 대해서는 <표 8> 참조).
- ② 활동대상이 회원 등을 위주로 공익적(共益的) 활동이 아님.
- ③ 운영조직 및 경리가 적정함.
- ④ 사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⑤ 정보공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⑥ 소할청에 사업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있음.
- ⑦ 법령위반, 부정행위 등이 없음.
- ⑧ 설립 후 1년을 넘은 기간이 경과함.

또한 인정 NPO법인에 더해 예비 인정 NPO법정도 신설되었고 양자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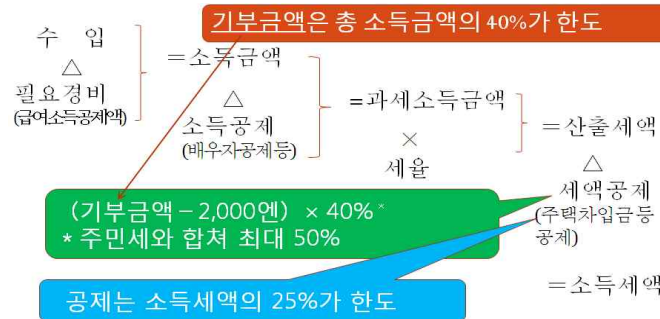
<표> 인정 NPO법인과 예비 인정 NPO법인의 차이

구 분	인정 NPO법인	예비 인정 NPO법인
요 건	8개 요건을 모두 충족	PST 이외 요건을 충족
유효기관	인정일부 5년간	예비 인정일부 3년간
신청가능한 법인	모든 NPO법인(단 설립 후 1년을 넘은 기간을 경과)	설립 후 5년 이내의 NPO법인(단 법 시행 후 3년간은 5년을 경과한 NPO법인도 가능)
세제혜택	① 개인이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공제 ② 법인이 기부한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범위의 확대 ③ 상속인이 기부한 경우의 비과세 ④ 인정 NPO법인 자체의 기부금 간주제도(みなし寄附)*	①~③은 인정 NPO법인과 같음 ④기부금 간주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脇坂誠也(2011: 31).

\* 기부금 간주제도(みなし寄附)라고 함은 인정 NPO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그 수익사업에 관한 기부금으로 간주해 일정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래 소득금액의 20%가 한도였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2012년 4월 1일 이후는 소득금액의 50% 또는 200만 엔 중 높은 금액이 한도가 된다. 단 기부금 간주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인정 NPO법인만으로 인정받지 않은 법인, 예비 인정 NPO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4> 세액공제 방법(일본)



자료: 脇坂誠也(2011: 15).

둘째, 인정 NPO법인 요건 중 PST 요건에 대해 <표 8>처럼 세 가지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표 8> PST 요건 판정기준(선택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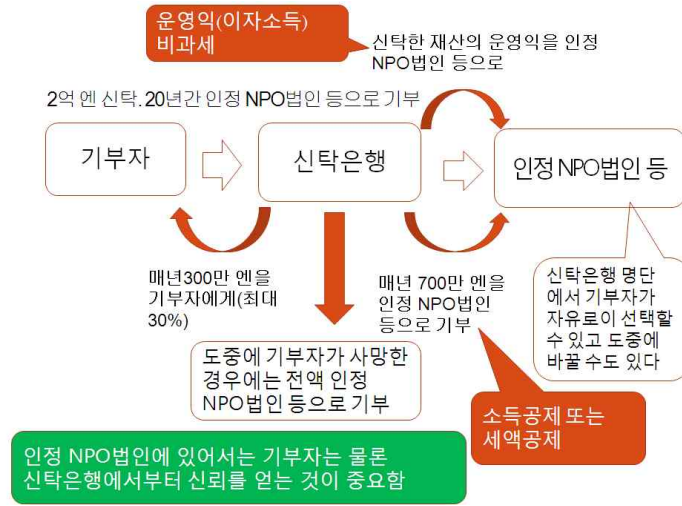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상대값 기준	실적판정 기간 내 총 수입에 차지하는 기부비율이 20% 이상.
절대값 기준	실적판정 기간 내 각 사업년도 중, 기부금 총액이 3,000엔 이상인 기부자 수 합계가 연 평균 100명 이상.
조례 개별지정 기준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구청촌(市區町村, 기초자치단체)이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한 NPO법인.

\* 실적판정 기간은 첫 신청 시에 한해 2년으로 하고 두 번째 신청 이후는 5년이다.

자료: 國稅廳(2011: 1).

셋째, 특정 기부신탁 세제의 창설이 있다. 이는 공익사단·재단법인·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기간 중 균등하게 인정 NPO법인 등에 기부하게 된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이익도 인정 NPO법인 등에 기부된다. 단 원금의 30%를 한도로 본인에게 환원할 수 있다(계약기간 중에서 균등하게 환원한다). 계약기간 중에 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잔액은 모두 인정 NPO법인 등으로 기부된다. 특정 기부신탁 세제를 예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특정 기부신탁 세제의 예시(2억 엔을 신탁한 경우)



자료: 脇坂誠也(2011: 20).

### 3. 한국 지원체계의 한계와 일본 사례의 시사점

#### 1) 한국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한계

##### (1) 한시적 재정지원

앞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으로 인건비, 사업 개발비, 시설·운영비, 사회보험, 특별보증 지원에 대해 각각 기간을 확인한 결과 <표 9>처럼 대체로 3년 내지 5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기간

지원내용	지원기간
인건비 및 전문인력	° 인건비는 3년간 차등 지원, 전문인력은 최대 3년간 지원
사업 개발비	° 지원한도 금액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7천만 원 이내
시설·운영비 대부	° 미소금융 재단 지원사업으로 대출금액 1억 내지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5년 내지 6년
사회보험(4대 보험)	° 원칙적으로 최대 4년간 지원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지원	° 보증금액 4억 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한시적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 있어 과제 및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 구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세제지원의 문제점

세제지원은 법인세 감면과 최저한 세율 인하 그리고 지정 기부금 및 손금산입이 있다.

첫째, 법인세는 4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몰기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이 역시 한시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저한 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최저한 세율 7%가 적용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것이 획기적,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셋째, 지정 기부금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리조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활동으로 지출한 자금을 보전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최호운, 2010: 98). 사실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익성 제고와 자립문제는 비영리, 영리를 불문하고 존재한다. 그리고 ‘노무비 대비 영업수입 비율이 30%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이 반드시 자립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다(최호운, 2010: 99).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기업 중 거의 절반(42.5%)을 영리조직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부금 적용이 없는 것이다.

<표 10>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구성(2012년 1월 현재)

구 분	영 리	비 영 리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생활협동 조합
종 류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생활협동 조합	영농조합 법인
단체 수 (비율)	274 (42.5%)	157 (24.4%)	115 (17.9%)	78 (12.1%)	12 (1.9%)	8 (1.2%)

자료: 중소기업청(2012: 5).

끝으로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은 일본 사례에서 검토하였듯이 세액공제 방식과 비교해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2) 일본 NPO법인 지원체계의 시사점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첫째 자유로운 활동의 여건정비, 둘째 정보공개·시민감시·PST를 통한 공익성 확보, 셋째 세액공제 도입과 기부 지원단체에 의한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한국에 적용 시 유의점과 아울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로운 활동의 여건정비(자율성과 설명책임의 양립)

일본에서는 NPO법 성립 전에는 민간이 행정으로부터 감독·지도를 받지 않고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기존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이 필요하고 그 공익성은 주무관청이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PO법은 행정이 지도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에 의한 감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법률위반을 하였을 때만 행정에 감독권한이 있다.

NPO법인의 장점으로 주민의 눈높이와 발상에 기초를 둔 자발적 활동과 공감에 의거한 운동을 할 수 있고 시민참여와 다양성을 중시할 수 있다. 그러나 NPO법인 수는 증가되고 공공사업을 수탁하는 단체도 늘었지만 시민참여와 제언활동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상황이다(橫田能洋, 2010; 네모토 마사쓰구, 2011: 154-155).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한국 사회적기업에 비추어 보면 유의점으로 우선 외부자금 확보와 이에 대한 설명책임 및 단체 의사결정의 자율성 제고라는 과제가 있다. 즉 사회적기업의 자율성은 정부·행정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행정에 의한 적절한 통제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성과 설명책임의 양립이 문제가 된다(네모토 마사쓰구, 2009: 51). 이 자율성과 설명책임의 양립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정보공개·시민감시 등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2) 정보공개·시민감시·PST를 통한 공익성 확보

NPO법인은 행정의 관여를 줄이고 정보공개<sup>28)</sup>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NPO법은 ①시민에 의한 체크를 기대한 정보공개와 ②행정에 대한 하청업체적 관계를 가급적 배제한 자유롭고 대등한 시민활동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한 것이다(脇坂誠也, 2010: 6).

기부세제에 있어서는 PST라는 기준을 도입해 폭넓은 시민들에게서 지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각 연도 중 기부금액 3,000 엔 이상인 기부자 수가 연 평균 100명 이상 있다는 기준이다.

기부세제를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회적기업 간 내부거래, 회계조작, 세금포탈, 기타 민간기업에 대한 형평성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에 PST와 같은 기준의 도입,

28) NPO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①사업 보고서, ②재산목록, ③대차대조표, ④수지 계산서(개정법 시행 후는 활동 계산서), ⑤임원명단, ⑥10명 이상 사원명단을 소할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할청은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NPO법, §28).

감시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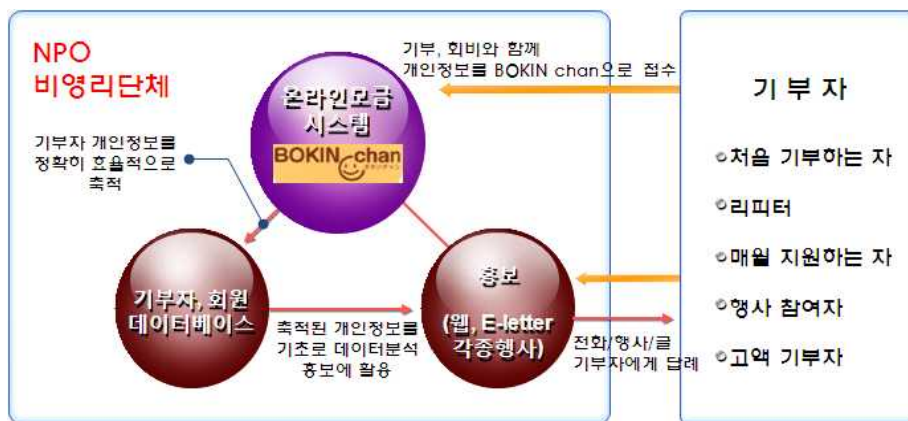
기본적으로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히도록 하고 지원여부를 각 개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각 단체가 매력 있는 활동을 창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3) 세액공제 도입과 기부 지원단체에 의한 기부문화 활성화

현재 NPO법인은 약 4만 개가 있으나 3,000만 엔 이상 사업규모를 가진 NPO법인은 약 15%에 불과하다. 이에 NPO 세제개혁, NPO법 개정, NPO법인 회계기준 책정, 새로운 공공 지원사업 등의 지원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중·저소득자에게 대한 혜택이 적었던 기존 소득공제에 더해 중·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실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혁과 아울러 기부를 알선, 중개하는 단체의 존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부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부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개발, 마케팅, 홍보, 운영지원 등이 있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기부 지원단체 사례



자료: 株式会社ソノリテ(2010).

그리고 기부를 모으고 단체에게 전달하는 기금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 사례로서 현재 일본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금을 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금조달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자원 등의 중개도 동시에 함으로써 기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기부와 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금의 사례



자료: いばらき未来基金(仮称)([www.npocommons.org/commons/work/2011/kikin.html](http://www.npocommons.org/commons/work/2011/kikin.html)).

한국에서는 이미 ‘해피빈’과 같은 온라인 기부 시스템 선구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기부세제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기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단체, 기금 및 사회적기업과의 연계가 작은 동네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 IV. 결론 및 함의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미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정부지원 외에는 CSR 차원의 일부 기업들의 협력 그리고 사회적기업 대표자, 간부들의 희생적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반면에 다양한 지역주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탱되는 구조가 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발전에 공헌한다는 차이점이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탱되는 관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주로 기부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내용은 특정 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 및 세제지원과 같은 일반적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건비, 사업비 지원과 같은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서 심사와 선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세제지원 등은 사회적기업 일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일본 NPO법인의 경우 인건비, 사업비 등의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NPO법인에 대한 기부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NPO법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부자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는 정부가 갖고 있는 지원자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인 지원동기를 끌어낼 만한 세제혜택이나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상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지탱되는 활동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 NPO법인에 대한 기부 세액공제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일본 사례와 접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사회적기업, 일본 NPO법인 외에도 양국에는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제3의 섹터에 속하는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부 외에 출자라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체계를 존중하면서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활동에 대한 요건을 가능한 한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기부자들의 자발적 동기에는 그 활동의 자유로움<sup>29)</sup>, 자율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2012년 1월 현재 644개 있는 사회적기업 사례를 통한 실증적 재정지원과 기부금 및 투자 운영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관련 금융제도에 대한 상세한 후속연구 또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과제 극복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향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지탱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sup>30)</sup>

## 참고문헌

경향일보. 2011년 12월 18일자. “재정지원 끝나는 사회적기업 존폐위기”.

곽선화. (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2012). 2012년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 선정계획.

29) 단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자유로움’에 대해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30)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께서 정성 어린 심사평을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구성, 그림 수정 등을 도와 주신 장우진 선배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2011). 「세금절약 가이드 I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기획재정부. (2010).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 김순양. (2010).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201-234.
- 김용호·송경수. (2010).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한. 「경영정보연구」, 29(4): 267-286.
- 김학실. (2011).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방정부연구」, 15(2): 165-185.
- 김혜원. (201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4(1): 57-82.
- 네모토 마사쓰구. (2009). 「지방정부 수준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자율성과 개방성에 의한 한·일 교류의 사례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1). 일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NPO법인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1(1): 131-162.
- 문보경. (2011). 사회적기업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2011년 충북고용포럼 제3차 세미나 자료집」, 21-51.
- 박재환·이우진. (2009). 사회적 기업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발전과제.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833-842.
-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60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 사회적기업 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안영규·박의룡. (2011).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국제경영리뷰」, 15(3): 25-43.
- 오내원·김창호·권인혜. (20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현석·김영호. (2011). 「사회적기업의 회계·세무 핵심주제 10 가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이원남. (201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이장우·장수덕. (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9(2), 59-92.
- 장우진·유근환·김렬. (2011).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2(4): 107-131.
- 장원봉. (2008a).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도시와 빈곤」, 89: 46-73.

- \_\_\_\_\_. (2008b). 새로운 고용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44: 55-63.
- \_\_\_\_\_. (2010).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2: 42-56.
- 조세특례 제한법(일부개정 2012.1.26 법률 제11241호).
- 중소기업 기본법(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52호).
- 중소기업 진흥공단(<http://www.sbc.or.kr>).
- 중소기업청. (2012). 중기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마련, 시행—사회적기업 전용 특별 보증을 통한 우대 자금 지원—(보도자료).
- 최승호. (2009).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 최해식. (201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 최호윤. (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 3(1): 91-110.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적 기업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화 모델에 관한 최종 보고서」.
- 渥美哲. 2011년 6월 30일자. ‘ここに注目! “新寄付税制きょう施行”’. NHK解説委員室 (<http://www.nhk.or.jp/kaisetsu-blog/>).
- いばらき未来基金(仮称)(<http://www.npocommons.org/commons/work/2011/kikin.html>).
- 後房雄. (2004). 自立と共同の両立は可能か—日本のNPOセクターが直面する課題. 「市政研究」, 143: 24-33.
- 後房雄. (2009). 「NPOは公共サービスを担えるか—一次の10年への課題と戦略」. 法律文化社.
- 株式会社ソノリテ. (2010). 「NPOトータルコンサルティングサービスのご案内」.
- 川北秀人. (2011). 성숙형 지역사회 구축 모델로서의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의 부흥 방안. 「재난관리 특별포럼—동일본 대지진 발생 7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국재해구호협회, 7-43.
- 現下の厳しい経済状況及び雇用情勢に対応して税制の整備を図るための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 法律 第82號).
- 國稅廳. (2011).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制度改正のあらまし.
- 帶刀治. (2004). まちづくりに取り組むNPO. 「社会運動研究入門—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 文化書房博文社, 225-247.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最終改正 平成23年 8月 30日 法律第 105号).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 法律 第70號).
- 内閣府. (2010). 社会事業法人(案)—社会事業の担い手を増やし新しい公共を実現する—. 「新しい公共」円卓会議作業チーム提出資料.

- 内閣府. (2011). 新しい公共支援事業について(<http://www5.cao.go.jp/npc/unei/jigyou/gaiyou.pdf>).
- 内閣府(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活動分野について(2011/12/31現在)(<http://www.npo-homepage.go.jp>).
- 日本税理士会連合会・税制審議会. (2010). 「所得税における所得控除と税額控除のあり方について—平成21年度諮問に対する答申—」.
- 横田能洋. (2010). NPOをめぐる3つの潮流と認定NPOとしての誓い (<http://www.npocommons.org/commons/about/nintei.html>).
- 脇坂誠也. (2010). みんなで使おう! NPO法人会計基準 ([http://www.npokaikeikijun.jp/wp-content/uploads/2011/11/lecture\\_material\\_20101012-.ppt](http://www.npokaikeikijun.jp/wp-content/uploads/2011/11/lecture_material_20101012-.ppt)).
- 脇坂誠也. (2011). 新寄付税制とNPO法改正(<http://blog.canpan.info/waki/img/527/kihuzesei2.ppt>).
- Jacques Defourny. (2007). サードセクターから社会的企業へ. 「社会的企業—雇用・福祉のEUサードセクター」. 日本経済評論社, 1-40.
- Thierry Jeantet. (2006). L'Economie Sociale européenne. 「勃興する社会的企業と社会的経済—T. ジャンテ氏招聘市民国際フォーラムの記録」. 同時代社, 5-43.